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도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117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

다. ②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 사건 적용법조(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